

※ 23년 판례

■ 법인세법

■ 대법원 2023. 6. 1. 2021두30679

[사실관계]

(1) 원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상표(이하 '이 사건 제1상표'라 한다) 및 L 면세점 상표(이하 '이 사건 제2상표'라 하고, 이 사건 제1상표와 합하여 '이 사건 상표들'이라 한다)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2) 원고의 계열회사인 D 주식회사(2017. 6. 30. '주식회사 L'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는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1상표를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D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3) 원고의 계열회사인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이하 위 법인들을 합하여 '이 사건 면세법인'이라 하고, D와 이 사건 면세법을 합하여 '이 사건 사용자법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제2상표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세법인과 사이에 경영관리 용역제공계약 및 경영관리 컨설팅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면세법인으로부터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것 이외에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들의 상표권자임에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자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사용자법인의 순매출액에 일정한 상표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5) 이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1상표에 대해서는 D 햄버거 영업부문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재산정하고, 이 사건 제2상표에 대해서는 사용료율을 낮추어 상표권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고지하였다(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쟁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거나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1)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1)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의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제1상표의 경우 D가 이를 영업에 사용하면서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하여 온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1상표가 가지는 재산적인 가치는 대부분 D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D로부터 이 사건 제1상표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사실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2) 상표권 사용료를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면세법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영관리수수료에는 이 사건 제2상표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제2상표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 대법원 2023. 5. 18. 2022두31570

[사실관계]

(1) 원고는 1994. 11. 29. 이 사건 상표권을 출원·등록하여 현재까지 적법한 상표권자로서 보유해 왔다. 그 외에도 aa그룹 영위 모든 업종의 상표권에 대한 공동등록자임에도, 이 사건 상표권 등록내역이 없는 aa그룹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한 적은 없다. 한편, 이 사건 상표권은 ‘aa’라는 문자 및 태양 모양의 로고(logo) 도형이 결합된 것으로 ‘aa’라는 상호의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에 대한 상표권은 원고를 포함한 10개의 계열사가 공동등록한 상태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 11. 1.자 gg회계법인 작성 ‘aaCNI 주식회사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에 따라 계산된(위 계열사들의 각 사업연도별 순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적용하여, 원고가 수취하지 않은 2010~2014 각 사업연도 상표권 사용료 총 65,669,016,689원을 익금산입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에 따라 익금산입액을 7,247,131,508원으로 경정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쟁점]

상표권자가 특수관계인인 상표권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1)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 계약상 근거와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를 영업에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상표의 신용 및 인지도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OO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피고가 위 계열사들의 각 사업연도별 순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공제한 금액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7,247,131,508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 및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대법원 2023. 5. 18. 2018두33005

[사실관계]

- (1) 원고는 방송업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 (2) 원고의 자회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상표를 문화사업 및 방송교육사업에 사용하였고, 자신의 상호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호사용료를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위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임에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위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회사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상호사용료와 자회사의 문화사업 및 방송교육사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541,998,489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와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위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감정인의 시가 감정가액인 1,583,739,000원만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원고의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쟁점]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 계약상 근거와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자회사가 사용한 상표는 이 사건 상표의 일부이거나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고 자회사가 상표권 사용료의 가치를 넘어설 만큼 이 사건 상표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자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일반적 거래 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심 감정인의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로 보아 원고의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의 경제적 합리성,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방법 및 감정결과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가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2004. 3. 19. OO건설, OO토지신탁과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 OO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원고가 OO토지신탁에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부지를 이전하고, OO건설이 그 지상에 방송제작시설과 수익시설을 신축한 후 원고에게 방송제작시설을 이전하며, 수익시설을 분양한 후 그 수익을 정산하되 수익시설의 분양업무는 OO건설이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OO건설은 수익시설 중 상업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상업시설'이라 한다)을 일괄매각하기로 하는 분양계획을 추진하면서 원고에게 일괄매각에 동의하는 대가로 이 사건 상업시설 중 약 3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

③ 원고의 동의 절차를 거쳐 OO토지신탁은 OO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상업시설을 일괄매각하였고, 원고는 OO건설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한 이 사건 상업시설 중 약 300평 대신 30억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수익시설 분양대금에 부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업시설 분양에 따른 수익의 일부로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주체일 뿐 이 사건 상업시설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수탁자인 OO토지신탁이므로, 이 사건 상업시설이 OO산업개발에 공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OO토지신탁이 부담한다. 따라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상업시설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4) 원심은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이 사건 상업시설 분양에 따른 수익의 일부로 보면서도,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에게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탁법률관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공익법인

- 대법원 2019두56418 , 2023. 2. 23.

[쟁점]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출연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출연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성실공익법인등과 일반공익법인등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의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실공익법인등과 일반공익법인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성실공익법인등과 일반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각 주식을 단순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성실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에 일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이나 성실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과 일반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을 종류별로 합산하는 방법으로 그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 미술관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더라도 각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주식을 출연받았다면 이를 동시에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에 있는 주식 2,000주(지분율 0.06%)는 가장 먼저 주식을 출연받은 원고 미술관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고 미술관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으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출연받은 주식을 모두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제2호, 제3호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날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법인등이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부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항 제2호는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을 기준으로, 제3호는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부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이러한 규정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공인법인등의 주식 취득 등의 원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부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을 정하는 기준일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같은 날 출연된 주식을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달리 같은 날 출연된 주식을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찾아 볼 수도 없다.

출연자는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하여 각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의 출연 시기와 순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출연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하여 주식을 순차로 출연하였음에도 그 출연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각 주식이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기록에 따르면 원고 미술관은 자신이 출연받은 소외회사 주식 중 2,000주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에 있는 주식으로 보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 미술관은 소외인이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 미술관, 원고 교회, △△재단 순으로 이 사건 주식을 출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원고 미술관이 주장하는 대로 출연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에 있는 주식 2,000주(지분을 0.06%)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가장 먼저 주식을 출연받은 원고 미술관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미술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미술관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의 출연은 그 시간적 선후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동시에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 시간적 선후관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사실관계]

- (1) 싱가포르에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GSA는 2003. 12. 19. 중국 청도시에 설립된 청도OO의 주식 90%를 취득하였다.
- (2) 원고들은 조부나 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상장주식을 자금 원천으로 삼아 GSA가 2004년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GSA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3) 한편 청도OO은 2006년 7월 무렵 석유화학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완공하고 2006. 9. 19. 청도시 당국으로부터 공장 시운전에 대한 동의를 받아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시작하였다.
-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이 사건 공장의 완공'으로 인하여 증가하였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5)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4. 9. 11. 원고들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쟁점]

- ① 공장의 완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②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시적 규정인지 아니면 제한적 열거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 (1)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의 의미 등에 관하여
 -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원심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도OO이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한 것은 기업이 제품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공장 건물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여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3)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을 원심과 같이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에

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구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조)로서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과는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4)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의 완공은 기업이 제품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면서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 즉, 각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을 구체화하였다. 위 규정에 따른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모두 해당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그 사유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 때이다. 그 중 제3호는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

③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된다.

5)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공장의 완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2)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5항은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의 등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 말미의 '등' 부분이 다른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 지하수개발·이용권에 대하여 '인·허가' 외에도 '신고수리'의 형태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이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공장의 완공이 '개발사업의 시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유형을 열거한 다음 이와 유사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취지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보는 전제에서 규정되어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2010. 2. 18. 및 2013. 6. 11. 각 개정되면서 기존 재산가치증가사유들을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였는데, 제4호에서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말미에 ‘인가·허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개정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이 지하수개발 등의 ‘신고수리’를 고려하여 ‘인·허가 등’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등’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부가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다) 위 법령조항이 변칙증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다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이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청도OO이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한 것은 위 각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들이 공통적으로 해당 사유로 인하여 장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 법령에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시적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되면서 제31조의9 제5항 제5호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가 추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열거되지 않은 어떤 사유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 사유여야 한다.

② 그런데 이 사건 공장의 완공은 일정한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을 예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개발사업의 시행’과 달리 공장이 완공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장차 그 공장을 이용한 사업으로 발생할 기대이익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거나, 그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완공 시점에서 그 공장 부지의 가치 증가분 등과 무관하게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국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었다고 본 원심은 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공장의 완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사실관계]

(1) 원고는 2009. 9. 7. 주식회사 OO건설을 설립하고, 2011. 9. 10. 유상증자 발행주식 30,000주를 인수하였다. OO건설은 2011. 12. 30. 부산 북구 금곡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A가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 12. 11.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 2. 28. 주식회사 OO코아를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 1,000주를 인수하고, 2012. 3. 24. 및 2013. 3. 26. 각 유상증자 발행주식 총 50,000주를 인수하였다. OO코아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A가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 7. 24.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A의 회장이자 부친인 소외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OO건설과 OO코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 증가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4)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2014. 7. 24.자 증여분(OO코아 주식 51,000주의 가치 증가액) 및 2014. 12. 11.자 증여분(OO건설 주식 30,000주의 가치 증가액)에 대한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구 상속세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이 사건 조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위 각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이 사건 조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조항은 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이 사건 법인이고,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및 관련 시행령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1)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보면, 과세대상 이익인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에서 ‘그 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 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2)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6항 제2호, 제3호는 비상장주식 등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에 직접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등 이 사건 조항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만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 증가분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그에 따른 과세대상 이익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환송 후 원심으로서 원심이 판단하지 않고 가정적으로만 전제하였던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및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는지’ 등 과세요건을 차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 조세특례제한법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두55972 판결

[사실관계]

(1) 원고는 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2015, 2016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법'이라 한다) 제66조 소정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법인세를 면제하지 않고, 2018. 3. 20. 원고에게 2015, 2016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판결요지]

(1)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에 관한 구 조세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되고, 면제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인 구 조세법 제66조 제8항 및 이 사건 규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 관청이 해당 법인세 면제를 거부할 수는 없다.

1) 구 조세법 제66조 제1항은 법인세 면제 대상을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할 뿐이고, 영농조합법인이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것을 법인세 면제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2) 원고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으로, 이 사건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구 조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아 왔다.

3) 이 사건 규정이 영농조합법인에게 법인세 면제 신청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정한 취지는 제출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 해당 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그 취지가 구 조세법 제66조 제1항이 정한 법인세 면제 대상인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으로 제한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규정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제출을 해당 법인세의 면제 요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법인세 면제 신청의 절차만을 위임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조세법 제66조 제1항이 정한 법인세 면제 대상 영농조합법인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